

##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 최종합격자 공고

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27일  
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

### 1.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명단

채용예정분야	직종	채용인원	서류전형 합격자 명단
월성	고건축	특별연구원 (가급)	1명 01 남00(5785)
	보존처리	연구원(가급)	1명 02 임00(8856)

※괄호안은 휴대전화 뒷번호, 합격자는 유선상 개별 안내

### 2. 채용에 필요한 서류

가. 최종합격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2026.05.11.(월)까지 신라월성연구센터(송문대, 경북 경주시 늦전2길 24-43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기본증명서(상세) 1부
- 주민등록등·초본 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남성의 경우 군경력 포함) 각 1부
- 결격사유 확인서 1부 [서식 1] 참조
-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정채용 확인서 1부 [서식2] 참조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[서식3] 참조
- 일반인 채용신체 검사서 1부(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가능)
- 통장사본(급여지급용) 1부

### 3. 기타사항

-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확인되면 임용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.
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채용담당자(054-778-8712)에게 문의 바랍니다.

- 붙임 1. [서식 1] 결격사유 확인서
- 2. [서식 2] 국가유산청 공정채용 확인서
  - 3. [서식 3]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## 결격사유 확인서

○ 성 명:

○ 생년월일:

본인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원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6. . .

확인자: (인)

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



